

대전지방법원 2021. 2. 8 선고 2019나1187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신상훈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왕항래

변론 종결 2020. 12. 14.

판결 선고 2021. 2. 8.

제 1 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 10. 29. 선고 2019가단50804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C과 피고 사이에 2016. 7.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23,889,51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3,889,5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C과 피고 사이에 2016. 7. 19. 체결된 주위적으로는 증예계약, 예비적으로는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942,8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어머니인 C 사이에, C이 2016. 5. 30.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2016. 12. 31.까지 변제하며, 지연손해금은 연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C에게 2015. 8. 11. 3,000만 원을, 2016. 5. 31. 400만 원, 2016. 6. 23. 7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반면 C은 원고에게 1 2016. 7. 29. 합계 10,001,200원, 2 2016. 12. 12. 800만원, 3 2016. 12. 16. 7,002,200원, 4 2016. 12. 17. 2,001,200원, 5 2017. 1. 18.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C은 2014. 7. 20.부터 당진시 G주택 H호를 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6. 7. 19. 임대인으로부터 위 7,000만 원을 돌려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전액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대여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2017. 7. 4.경 C의 J조합 등 계좌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17타채1855)을, 2017. 7. 17.경 C의 K 주식회사 등 계좌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같은 지원 2017타채1984)을 받았고, 2017. 7. 18. 4,379,065원을, 2019. 6. 24. 2,187,195원을 각 추심하였다.

마. C은 2018. 2. 2. 원고의 채권액 33,745,380원(가장 많은 금액이다)을 포함하여 8명의 채권자가

자신에 대하여 합계 164,546,057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 파산·면책을 신청하였는데, 2018. 11. 9. 재판부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위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C의 신청은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8하단149 파산선고, 2018하면146 면책 사건).

바. 원고는 C을 이 사건 공정증서 기재 돈에 관한 사기 및 이 사건 송금행위에 관한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2019. 8. 13. 원고와 C은 수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원고가 C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 이후 C이 원고에게 송금한 총 2,590만 원이 위 3,000만 원의 변제로 보인다고 C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9형제1684호).
사.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C은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20,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C이 5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그 기간 중인 2016.7. 19. 이 사건 송금행위가 이루어져 원고도 당연히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가사 원고와 C이 피고 주장과 같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송금행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은 35,942,872원이다. 즉 원고가 2017. 7. 18. 추심한 4,379,065원을 2017. 1. 1.부터 2017.7. 18.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453,425원과 원금에 순서대로 총당하면 원금은 28,074,360원이 남고, 여기에 남은 원금에

대한 2017. 7. 19.부터 2019. 5. 31.까지의 이자 7,868,512원을 더하면 남은 대여원리금은 35,942,872원이 된다.

○ C은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포함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행위를 하였다. 이는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다.

2) 피고

원고가 먼저 C의 자녀에게 차를 사주겠다며 3,000만 원을 증여하였다.○ C이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려고 하자, 원고는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려면 위 3,000만원을 갚으라며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강요(또는 협박)하였고, C은 원고와의 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실제 돈을 빌리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C이 송금한 돈과 원고가 추심한 돈 등을 합하면, 위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

나. 판단

1) 원고의 대여금 채권의 존부 및 액수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면, C은 그 기재 내용대로 2016. 12. 31.까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강요(또는 협박)에 의하여 C이 허위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 상 대여금의 변제에 관하여 본다.

○ 갑 제17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C은 2018. 2. 2. 파산·면책 신청을 하면서 원고에게 33,745,380원의 채무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C이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 18.까지 합계 28,004,600원을 송금하고, 원고가 2017. 7. 18.4,379,065원을 추심함으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 채무가 전액 변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이다. 피고는 C이 법률에 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C의 파산·면책 사건에서 수차례에 걸친 서면공방이 있었음에도 C은 원고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전혀 다투지 않았다. 반면,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C의 변제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C의 파산·면책 사건이 기각되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 진행된 수사기관에서의 당사자 진술인 점을 참작할 때,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당사자들의 진술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본 것만으로 이사건의 쟁점인 C의 위 송금액이 변제금이라고 인정할 것은 아니다. 이하 C의 위 송금액이 변제금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원고나 피고 누구의 주장에 의하든, 위파산·면책 신청 당시 원고의 채권액 계산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 C이 원고에게 송금한 1 2016. 7. 29. 합계 10,001,200원에 관하여 원고는, 위송금액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변제기 이전의 송금이어서 이 사건 공정증서의 변제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직후 원고가 C에게 추가로 합계 1,100만원을 빌려주었다며 위 송금액은 1,100만 원에 대한 변제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를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타 채무의 변제에 총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타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타 채권에 대한 변제총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타 채권이 법정총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등 참조).

위 송금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합계 1,1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고, C의 위 송금액은 위 채무의 변제에 우선 총당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위 채무의 변제가 우선되어야 하는 관계라는 점을 추가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갑제13,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추가 증명부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위 송금액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원금의 변제에 해당한다.

○ C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 중 2 2016. 12. 12. 800만 원, 3 2016. 12. 16. 7,002,200원, 4 2016. 12. 17. 2,001,200원에 관하여 원고는, C이 도박자금으로 작은 단위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원고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고, 그 직후 원고가 위 돈을 모두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송금액이 변제금임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4(일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도박을 하였고, 원고가 C으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은 뒤 거의 직후(밤9시 넘어 송금받은 경우에도 송금 직후) 위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부분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 C이 원고에게 송금한 5 2017. 1. 18. 100만 원에 관하여 원고는, C의 계원인소외 L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고, C이 L가 원고에게 갚을 돈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였으며, 이를 원고가 항의하자 C이 원고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송금액이 변제금임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부분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가 2017. 7. 18. 4,379,065원을, 2019. 6. 24. 2,187,195원을 각 추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변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3,000만 원 - 10,001,200원 = 19,998,800원(1차 대여원금 잔액)
- 4,379,065원 - 19,998,800원에 대한 2017. 1. 1.부터 2017. 7. 18.까지의 지연손해금 1,635,518원(원 미만 버림) = 2,743,547원
- 19,998,800원 - 2,743,547원 = 17,255,253원(2차 대여원금 잔액)
- 17,255,253원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2019. 6. 24.까지의 지연손해금 5,006,387원
- 5,006,387원 - 2,187,195원 = 2,819,192원(지연손해금 잔액)
- 17,255,253원에 대하여 2019. 6. 25.부터 당심 변론종결일인 2020. 12. 14.까지의 지연손해금 3,815,065원
- 최종 대여원리금은 합계 23,889,510원(= 17,255,253원 + 2,819,192원 + 3,815,065원)이 됨.

2) 이 사건 송금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송금행위의 성격이 증여임은 피고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무자력상태에 있던 C이 반환받은 임차보증금 7,000만 원 전액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C과 피고 사이의 2016. 7. 19. 체결된 증여계약은 23,889,510원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3,889,5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는 예비적으로 C과 피고 사이의 2016. 7. 19. 체결된 계약이 채무변제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원리금 채권의 범위가 일부 인정되어 원고의 채권자취소소송이 일부만 받아들여지는 것인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4. 결론

제1심 판결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유석철, 판사 신혜영, 판사 신영희